제1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09. 10. 21. (수)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채옥

【목	차】
----	----

- 1.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안 \cdots 2

<의안번호 제2009 - 23호>

□ 거창군 산람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09. 5. 14.

나. 제 출 자: 안철우 의원 외 1명

다. 회부일자: 2009. 5. 15.

2. 제안이유

○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에서 영농부산물의 소각을 금지하여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에서의 소각금지 제반시책 마련과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에서의 소각금지 등 군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에서의 가연성잡초 등은 모두 베기로 제거토록 하고, 산불예방 등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을 선정 시상 및 보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에 대한 홍보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악취방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에

1)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산림에 인접한 토지 등에서 영농부산물의 소각을 금지하여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금지 등 제반시책 마련과 친환경농업육 성 기반조성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서는 논・밭두렁 등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산불예방 등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을 선정 시상 및 보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에 대한 홍보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음.

○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겨울철 산불 취약기를 맞이하여 사전에 충분한 계도 및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관계 법 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4조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산림이나 <u>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u> 다만,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연물질(가연물질)의 제거 등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경우로서 <u>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에 들어가는 자가 화기(화기) 및 인화(인화)・발화(발화) 물질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 1.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 다만, <u>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u>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전문개정 2007.12.21]

제7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u>제19조제5항</u>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목벌채등을 한 자
- 3. <u>제45조제2항</u>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입목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 2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 3. 제50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안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 4. <u>제54조제1항</u>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 어간 자
- 5.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4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54조제3항에 따른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간 자
- 3. <u>제54조제4항</u>을 위반하여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frac{1}{M} 50 \frac{1}{M} 2$ 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자
- 2. 제57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⑤<u>제10조제2항</u>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⑧ 제6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u>「비송사건절차법」</u>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⑨ 제7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폐기물 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 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악취방지법

제15조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 금지) 고무·피혁·합성수지류·폐유류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그 밖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로서 <u>환경부령이 정하는</u> 물질은 <u>환경부령이 정하는</u>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워서는 아니된다.

<의안번호 제2009 - 39호>

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_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09. 10. 8.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09. 10. 13.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중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어,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2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09. 9. 1. ~ 2009. 9. 21.) 결과: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 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 치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 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거창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u>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u>를 대상으로 차고지 설치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 등 위반 시는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u>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한 홍보 및 계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관계 법 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9.8.7] [법률 제9432호, 2009.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 6. (생략)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노선(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2. 구역(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시자"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 2. 최저 면허기준 대수(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 할 수 있다.
-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9.3.31] [대통령령 제21399호, 2009.3.31, 일부개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 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렁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 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 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 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公法人), 회사,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가 누구이든 상관 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 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형 · 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제4조(등록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여 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 ②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말한다.
-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 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1.26>
 -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6.16] [국토해양부령 제135호, 2009.6.16,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관할관청"이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 구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려는 사업구역이 그 시·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경우
- 2.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섬이나 외딴곳,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 인 경우
- 3.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 ③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8. 11. 6>

[별표 2] <전부개정 2008. 11.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당 면적(최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	
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 형	$36\mathrm{m^2}\sim\!40\mathrm{m^2}$
2) 중 형	$23\mathrm{m}^2\sim\!26\mathrm{m}^2$
3) 소 형	$15\mathrm{m}^2\sim 18\mathrm{m}^2$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13\mathrm{m}^2\sim 15\mathrm{m}^2$
<u>2) 개인택시</u>	10㎡~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
	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고

-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의 차고 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 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 4.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한정 면허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 5. 차고면적기준은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동차 외에 예비자동차에도 적용한다.
-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주식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과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택시운송사업의 차고로 사용하려 할때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인정·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 7.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 8.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한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대당 면적기준의 범위에서 관할관 청이 정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7.14] [법률 제8980호, 2008.3.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화주)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 8. (생략)
-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증 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 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임대할 수 있다.
-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29, 타법개정]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4.19>

- 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정대수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제14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2.1, 2008.2.29>
 -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 2.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변경허가
 - 3. 법 제3조제7항(법 제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7.1]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7.1, 타법개정]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4.21>
 - 1. "관할관청"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 2. "영업소"라 함은 주사무소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당해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곳을 말한다.
 - 3. "화물취급소"라 함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화물의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
 - 4. "사업장"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의 주·정차시설 및 사무소등이 갖추어진 장소 로서 계속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후단 생략)

- 제4조(관할관청)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제외한다)은 주사무소(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하되, 주소지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확보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본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04.4.21>
 - 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제외한다)의 영업소 및 화물 취급소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04.4.21>
 - ③ 화물자동차운수사업(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제외한다)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2 이상의 관할관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된다. <신설 2004.4.21>
 - ④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은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신설 2004.4.21>

제2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제5조(차고지의 설치등) ①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 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차고 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4.21>
 -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그 특별시·광역시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 3.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 로 이용하는 경우
 -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차고지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차고지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2006.8.7>
- 1. 삭제 <2006.8.7>
- 2. 삭제 <2006.8.7>
- 3. 삭제 <2009.3.26>
- 4.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 5. 당해차고지의 위치도
- ④ 제3항에 따른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주민등록표등본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8.7, 2009.3.26>
-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 2.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3조(허가기준 <개정 2004.4.21>) <u>법 제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u> 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4.4.21>

- 제14조(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①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 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 항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 1.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서류
- 2.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3.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4.4.21]

[별표 1] <개정 2008.10.31> <개정 2009.7.1> <u>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u>제13조관련)

업 종 구 분	일반화물자동차 운 송 사 업	개별화물자동차 운 송 사 업	<u>용달화물자동차</u> 운 송 사 업
허가기준 대수	○1대 이상	○1대	○1대 이상
최저자본금	○1억원(소유대수가 2 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천만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사무실및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 (소유대수가 2대 이 상인 경우에 한한다)	없음	○영업에 필요한 면적 (소유대수가 2대 이 상인 경우에 한한다)
<u>최저보유차고</u>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 당 화물자동차의 길이 와 너비를 곱한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 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 니하도록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고

- 1.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본금과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2.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 부분은 이를 자기소유로 본다.
 - 가. 화물터미널 또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주차장소 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다.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 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분에 한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라. 타인소유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마. 창고·판매·제조업 등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 는 경우
 - 바.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3.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소요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 4.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 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5. 화물자동차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주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 과 건축법령에 의한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 내지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7. 관할관청은 당해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유차고면적기준을 위 표에 의한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 8. 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전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 9.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2011년 7월 1일까지 위 표의 최저자본금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